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23.1.26)
- ② 국민권익위, “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 있다”(23.1.20)
- ③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23.1.11)
- ④ 국민권익위, 기업 현장 직접 찾아 애로사항 듣고 해결 나선다(23.1.10)
- ⑤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22.12.3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23. 1. 26. 국민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장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46개) · 광역자치단체(17개) · 기초자치단체(226개) · 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표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501)	28개(5.6%)	139개(27.7%)	194개(38.7%)	124개(24.8%)	16개(3.2%)
중앙행정기관 (46)	4개(8.7%)	12개(26.1%)	14개(30.4%)	16개(34.8%)	0개(0.0%)
광역자치단체 (17)	0개(0.0%)	5개(29.4%)	9개(52.9%)	2개(11.8%)	1개(5.9%)
기초자치단체 (226)	15개(6.6%)	56개(24.8%)	91개(40.3%)	50개(22.1%)	14개(6.2%)
교육청 (17)	1개(5.9%)	4개(23.5%)	7개(41.2%)	5개(29.4%)	0개(0.0%)
공직유관단체 (195)	8개(4.1%)	62개(31.8%)	73개(37.4%)	51개(26.2%)	1개(0.5%)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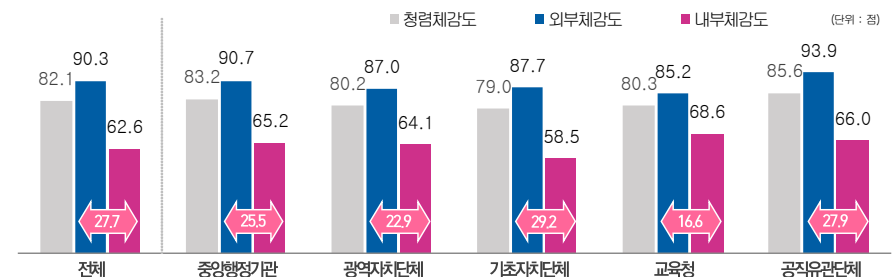
구분	종합청렴도(점)	청렴체감도(점)	청렴노력도(점)
전체기관	81.2	82.1	82.2
중앙행정기관	83.6	83.2	87.0
광역자치단체	81.1	80.2	87.6
기초자치단체	76.6	79.0	75.9
교육청	83.9	80.3	91.5
공직유관단체	85.7	85.6	87.1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다소 미흡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29.2점),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16.6점)이 가장 작았다.

< 기관유형별 외부·내부 체감도 비교 >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 보다는 낮았다.

<외부·내부 체감도 부패경험률>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0.31%	0.13%	0.10%	0.11%	0.05%	0.04%	0.04%
내부	2.11%	0.62%	0.82%	1.18%	0.38%	0.14%	-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의미있는 분석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충실히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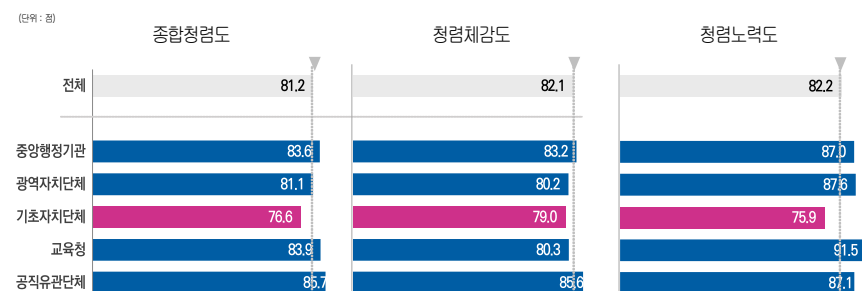
50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95% 이상 기관들이 운영지침 제정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또 평가 대상 기관 소속 약 85만 7천 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이수했다.(이수율 90.7%)

이어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인식이 외부 업무과정은 물론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 인식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둘째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평균 점수>



또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

보다 낮았다.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가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됐다.

시책효과성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6.1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7.2점)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책효과성 평가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다. 특히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인 청렴노력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기관유형별 시책효과성 평가 결과 >

구분	내부 체감도	시책 효과성	반부패 계획	기관장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 방지	신고자 보호
전체	62.6	69.5	72.0	70.2	70.8	69.9	64.6
중앙행정기관	65.2	68.2	70.7	69.8	68.7	68.4	63.2
광역자치단체	64.1	71.4	73.8	72.8	72.2	71.2	67.1
기초자치단체	58.5	67.2	69.6	68.1	68.8	67.1	62.3
교육청	68.6	76.1	79.0	77.5	77.3	75.6	70.9
공직유관단체	66.0	71.8	74.4	71.8	72.9	72.9	66.9

이는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1.2점)보다 높았다.

시도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82.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2.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아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이나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했다.

먼저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5.2점, 청렴체감도 77.6점, 청렴노력도 78.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연구·행정 관련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71.4점)’이 다른 항목 평균(78.9점)에 비해 낮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는 기관장·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점수(69.5점)를 받았다.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국공립대학교 유형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69.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별도첨부 1.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붙임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표

1-1. 중앙행정기관 I (장관급)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25)	청렴체감도(25)	청렴노력도(25)	부패실태
1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등급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3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부패실태 평가 (감점) -
4등급	검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5등급	-	외교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1-2. 중앙행정기관Ⅱ(차관급)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21)	청렴체감도(21)	청렴노력도(21)	부패실태
1등급	질병관리청 통계청	질병관리청	-	부패실태 평가 (감점)
2등급	관세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병무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3등급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국세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등급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5등급	-	기상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2.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17)	청렴체감도(17)	청렴노력도(17)	부패실태
1등급	-	-	광주광역시	부패실태 평가 (감점)
2등급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등급	강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4등급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5등급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3-1. 기초자치단체(시)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75)	청렴체감도(75)	청렴노력도(75)	부패실태
1등급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여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2등급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부패실태 평가 (감점)
3등급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4등급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구 분	종합청렴도(75)	청렴체감도(75)	청렴노력도(75)	부패실태
1등급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보령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북도 충주시	부패실태 평가 (감점)
3등급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 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제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3-2. 기초자치단체(군)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82)	청렴체감도(82)	청렴노력도(82)	부패실태
1 단계	강원도 평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함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예산군	경상남도 함안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남해군 전라남도 영광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음성군	
2 단계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 예천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진천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천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화순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부패실태 평가 (감점)
3 단계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청송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영암군	

구 분	종합청렴도(82)	청렴체감도(82)	청렴노력도(82)	부패실태
3 단계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4 단계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철곡군 경상북도 울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완주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인제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함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철곡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릉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정수군 충청북도 단양군	부패실태 평가 (감점)

구 분	종합청렴도(82)	청렴체감도(82)	청렴노력도(82)	부패실태
5 평 가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영월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금산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진군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3-3. 기초자치단체(구)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69)	청렴체감도(69)	청렴노력도(69)	부패실태
1 평 가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2 평 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패실태 평가 (감점)
3 평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분	종합청렴도(69)	청렴체감도(69)	청렴노력도(69)	부패실태
1등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중구	부패실태 평가 (감점)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울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동구	
4등급		=	+	-
5등급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4. 교육청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17)	청렴체감도(17)	청렴노력도(17)	부패실태
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부패실태 평가 (감점)
		=	+	
4등급	강원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5등급	-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5-1. 공직유관단체 I (공기업)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35)	청렴체감도(35)	청렴노력도(35)	부패실태
1 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	-	
2 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3 등급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 부패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종합청렴도(35)	청렴체감도(35)	청렴노력도(35)	부패실태
5 등급	-	=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 a)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5-2.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일반)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57)	청렴체감도(57)	청렴노력도(57)	부패실태
1 파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2 파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파괴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안전관리원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부패실태 평가 (감점)

구 분	종합청렴도(57)	청렴체감도(57)	청렴노력도(57)	부패실태
4 파괴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5 파괴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5-3. 공직유관단체Ⅲ(준정부중소형)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 분	종합청렴도(36)	청렴체감도(36)	청렴노력도(36)	부패실태
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등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부패실태 평가 (감점)

구 분	종합청렴도(36)	청렴체감도(36)	청렴노력도(36)	부패실태
4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패실태 평가 (감점)
5등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 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5-4. 공직유관단체Ⅳ(중점)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30)	청렴체감도(30)	청렴노력도(30)	부패실태
1등급	-	-	-	
2등급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은행 한국폴리텍대학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은행 한국폴리텍대학 한전MCS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폴리텍대학 한전원자력연료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국거래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방기술품질원 금융감독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거래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은행 한전MCS	부패실태 평가 (감점)
4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보건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거래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산림조합중앙회 코레일유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5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체육회 환경보건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환경보건협회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5-5. 공직유관단체Ⅴ(지방공사공단)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37)	청렴체감도(37)	청렴노력도(37)	부패실태
1등급	-	부산교통공사	-	
2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전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전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산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3등급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안산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파주도시관리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파주도시관리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남양주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부패실태 평가 (감점)
4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남양주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안산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파주도시관리공사	

구분	종합청렴도(37)	청렴체감도(37)	청렴노력도(37)	부패실태
평가 순	충북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	+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6. 시도경찰청(시범)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18)	청렴체감도(18)	청렴노력도(18)	부패실태
1등급	-	-	부산경찰청 서울경찰청	부패실태 평가 (감점)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충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대구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세종경찰청	
2등급	강원경찰청 대전경찰청 부산경찰청 세종경찰청 전남경찰청 충남경찰청	강원경찰청 경북경찰청 대전경찰청 인천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남경찰청 광주경찰청 대전경찰청 전북경찰청 제주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광주경찰청 울산경찰청 인천경찰청 제주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광주경찰청 부산경찰청 세종경찰청	강원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울산경찰청 인천경찰청 전남경찰청	
3등급	-	울산경찰청 제주경찰청	-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7. 국공립대학교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33)	청렴체감도(33)	청렴노력도(33)	부패실태
1 평가	부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2 평가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3 평가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부패실태 평가 (감점)
4 평가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밭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5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체육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8.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구분	종합청렴도(17)	청렴체감도(17)	청렴노력도(17)	부패실태
1 평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 평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3 평가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 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 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부패실태 평가 (감점)
4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5 평가	서울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국민권익위, “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 있다”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실시 결과 발표

(23. 1. 20. 국민권익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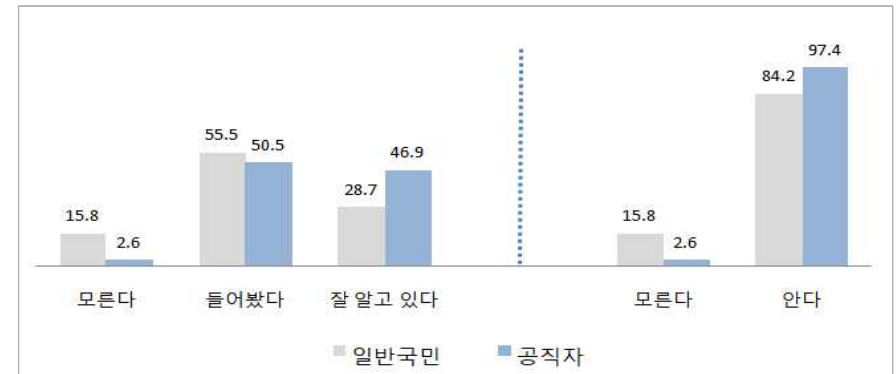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단위:%) >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 광고·홍보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경로 (단위 : %, 복수응답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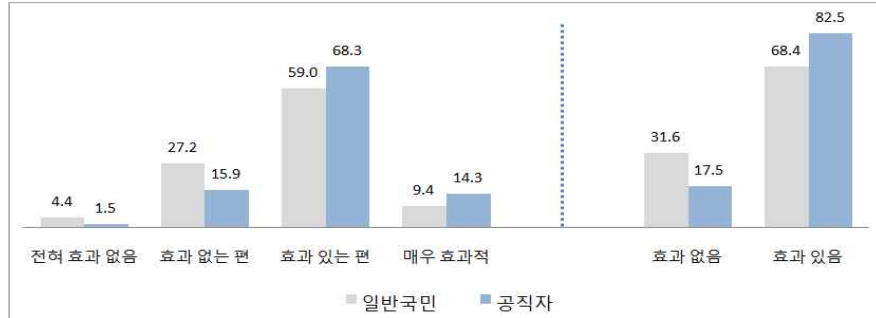
인지경로	일반국민	인지경로	공직자
TV, 라디오	71.7	직장교육	80.0
온라인 매체	59.9	언론보도	30.9
신문·잡지 등 인쇄물	27.0	업무수행과정	28.9
주변지인	9.6	광고 및 홍보물	6.6
기타	1.3	주변지인	1.4
-	-	기타	3.0

< 이해충돌방지 효과성 인식 >

일반국민의 68.4%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적+효과가 있는 편)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0%) 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다.

〈 이해충돌방지법 효과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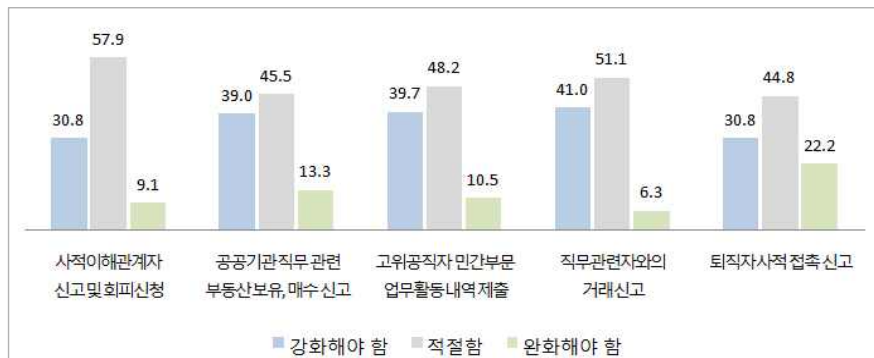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적절성 〉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한지 설문한 결과,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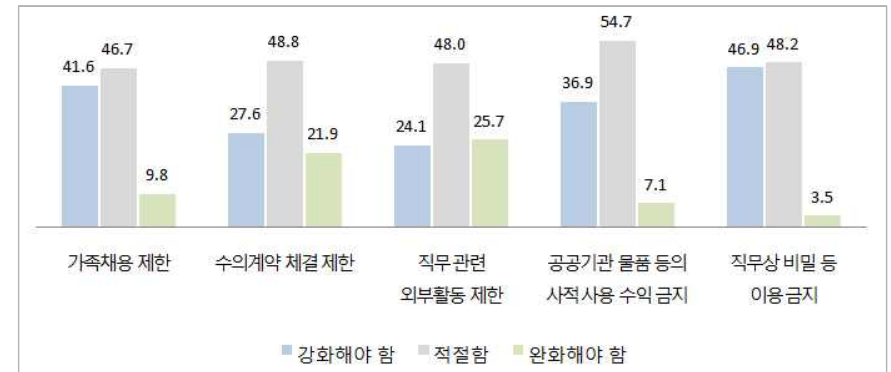
〈 신고·제출 의무의 적절성 (단위:%) 〉



이어 5개 제한·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았다.

〈 제한·금지 규정의 적절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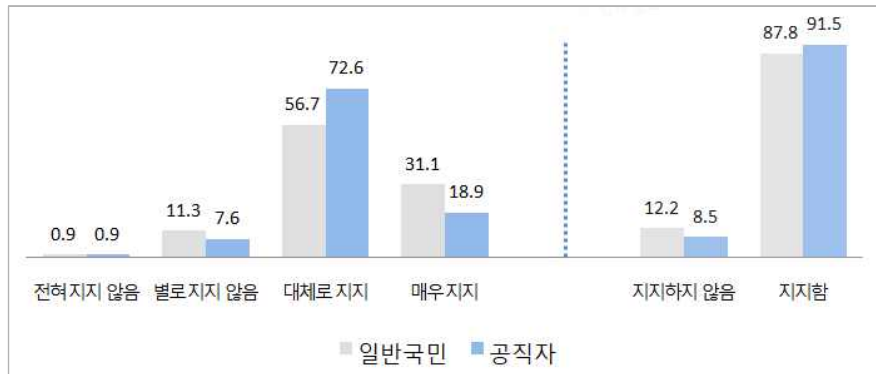
또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

일반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은 부정하게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0%),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단위:%)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초기인데도 많은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공공기관'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
부패 관행 원천 차단

(23. 1. 11. 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

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임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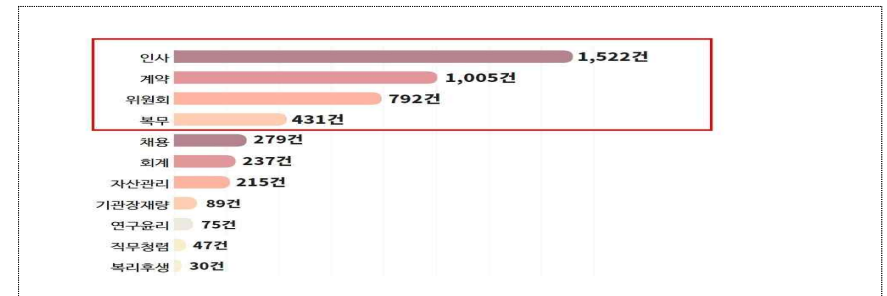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년 ~ '22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성과

목표

공공기관의 구조적·관행적 부패 근절

전략

사규 부패요인 사전 분석해
종합개선대책 마련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체계 확립

추진과제	주요추진실적
① 공공기관 사규 평가 기반 마련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20년~'22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② 공공기관 사규 평가 및 개선권고	(‘20년) 187개 공기업 사규 15,719개 평가(1,971건 개선) (‘21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11,127개 평가(501건 개선) (‘22년)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 21,328개 평가(2,250건 개선) (‘21~'22) 연도별 개선권고 이행실태 점검
③ 성과분석 및 자율평가 지원	506개 공공기관 대상 사규 부패영향평가 설문조사 공공기관별·업무내용별·평가기준별 3년간 결과 및 성과분석

↓ 거둔 성과 ↓

- ★ 공공기관 부패예방 및 청렴경영 동력 확보
 - ↳ 공공기관 80.2%가 부패예방에 도움, 기관 운영 전반 부패진단 효과
- ★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 ↳ 임직원 청렴수준 제고 66.9%, 공직자 60.9점으로 긍정 평가
- ★ 부패영향평가 제도 인식·관심 제고
 - ↳ 향후 평가 필요 69.1%, 3년간 평가실적 및 우수사례 교육·홍보 효과

2 개선권고 및 이행 실적

① 공공기관별

○ 3년간 506개 기관 48,174개 사규에 대해 4,722건(9.8%) 개선권고

- 1개 공공기관당 평균 건수는 9.3건이고, 사규당 0.1건

[3개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현황]

(단위 : 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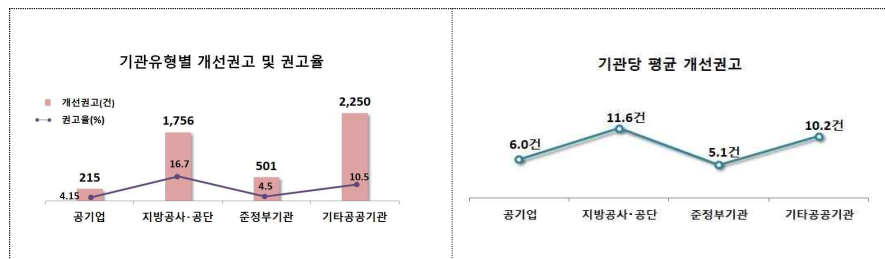
연도		점검기관	점검사규	개선권고(권고율)	평균개선권고수	
					기관당	사규당
'20년~'22년		506	48,174	4,722(9.8%)	9.3	0.1
2020	공기업	36	5,182	215(4.15%)	6.0	0.04
	지방공사·공단	151	10,537	1,756(16.7%)	11.6	0.17
2021	준정부기관	99	11,127	501(4.5%)	5.1	0.05
2022	기타공공기관	220	21,328	2,250(10.5%)	10.2	0.1

○ 개별 기관별로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등 50개 지방공사·공단이 각 2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19건 차지

○ 개선권고 건수는 기타공공기관이 2,250건으로 가장 많으나,

- 개선권고율과 기관당 평균 개선권고는 지방공사·공단이 11.6건, 16.7%로 최다

→ 상대적으로 기관 통제가 미약하고 경영 자율성이 높은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결과



② 업무내용별

○ 3대 업무분야로 분류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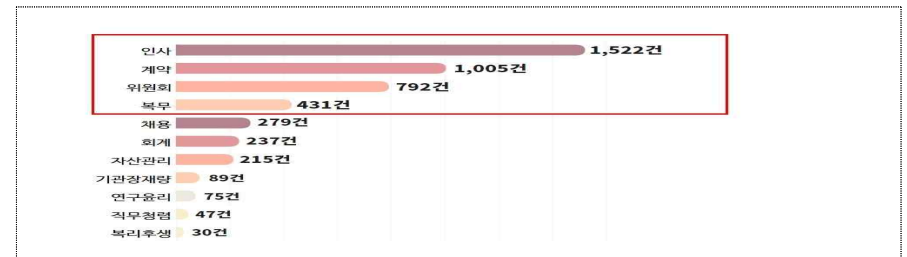
- 인사·채용비리 근절이 2,232건, 47.3%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

○ 11개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가 개선권고의 79.4%인 3,750건을 차지

* 인사 1,522건(32.2%) > 계약 1,005건(21.3%) > 위원회 792건(16.8%) > 복무 431건(9.2%)

→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인사·계약업무에서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

[업무내용별 개선권고 현황]



③ 평가기준별

○ 4대 평가분야 및 12개 평가기준별 개선권고는 총 8,053건(중복)

- (평가분야) 이중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기준이 포함된 준수분야가 43.3%인 3,490건을 차지했고, 집행 3,068건, 부패통제 1,192건 순
-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전체의 35.9%인 2,894건이고, 특혜발생 가능성도 28.4%인 2,286건임

→ 공공기관 사규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과도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이 가장 많이 내재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개별 업무에 따라 평가기준이 적용된 현황을 보면,
 - 특혜발생 가능성과 제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은 계약업무가 최다인 각 807건, 774건이고, 다음이 인사 440건, 755건이 적용
 -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인사업무 규정에서 전체 724건 중 대다수인 703건이 적용되었고, 재정누수 가능성은 79건인 자산관리와 69건인 회계업무 규정에서 많았음
 - 이해충돌 가능성은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유무 등에서 많이 적용되므로 위원회 업무에서 373건으로 최다 발생

④ 개선권고 이행실적

- 이행점검 대상 개선권고 2,472건 중 2,242건 이행완료, 이행률 90.7%
- 공기업은 100%인 215건 모두 이행완료, 지방공사·공단은 1,756건 중 90.1%(1,582건), 준정부기관은 88.8%(445건) 이행완료

[공공기관 유형별 사규 개선권고 이행현황]



3 주요 개선과제

① 10대 개선과제

① 출 장 공공기관 허위출장 및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해 교통비·숙박비 정산절차 신설, 공무 국외출장 사전 심사 시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 마련, 심사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② 재취업 공공기관 퇴직자의 공정한 재취업 심사

- 재취업 심사 규정과 징계 등 취업제한사유가 포함된 심사평가 기준 마련, 심사와 재취업 현황 공개 및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

③ 승 진 중대 비위행위자 등 승진 제한

- 승진제한 대상에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처분 중인 자를 포함하고, 갑질 행위를 승진제한기간 가중 비위행위로 추가, 중대 비위행위*의 승진제한 가중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④ 채 용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 법령에 근거한 특별채용과 특정요건을 갖춘 다수인 대상의 제한 경쟁채용 구분, 특별채용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근거 없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및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거쳐 채용

⑤ 계 약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절차 마련

⑥ 연 구 연구부정행위 방지

-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

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

⑦ **상품권**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및 부정사용 차단

- 예산과 용도 구분해 구매, 유관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금지, 사용내역 정기 공개 및 실태점검 통해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등 상품권 구매·관리 개선

⑧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 통제

-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및 특정물품 구매 등 사용제한기준을 명시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적정 사용 시 징계와 회수 조치

⑨ **이해충돌** LH·SH 등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 기술심의위원회(LH·SH 등), 인사관련 위원회 등 주요 심의기구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마련,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금지

⑩ **장기자문** 퇴직공직자에 대한 장기자문 제도 폐지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문위원 운영 유형에서 장기자문을 삭제해 장기자문 제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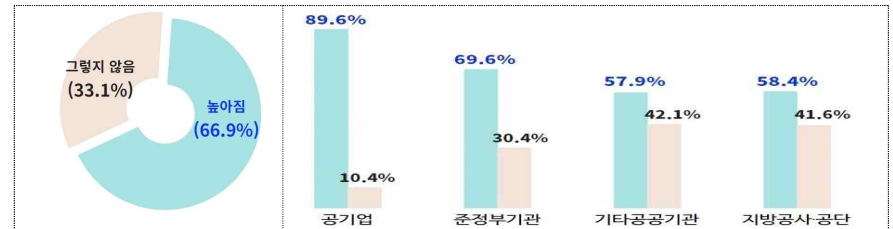
4 주요성과

① 공공기관 청렴 수준 향상

○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인식도 제고

- 사규 평가 후 소속 임직원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음(공공기관 대상 사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청렴수준 개선 인식도]



○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 '20~'21년 사규 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만 +0.05% 상승

* 중앙부처 등 대다수 기관이 전년에 비해 '21년 내부청렴도가 평균 -0.02%로 하락

○ 공직자들도 공공기관의 청렴 향상에 긍정적으로 평가

- 공직자들도 공공기관이 이전보다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인식 39.1점보다 1.5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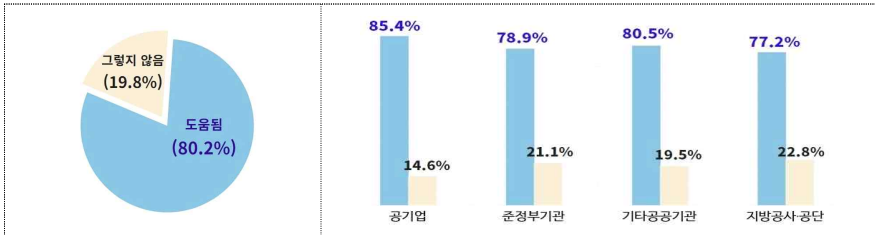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관련 부패인식도 조사('22년)]



② 공공기관 부패예방 및 청렴경영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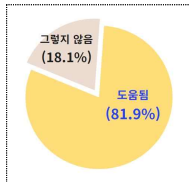
○ 공공기관 부패예방에 실질적 기여

-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2%가 부패영향평가로 인해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부패예방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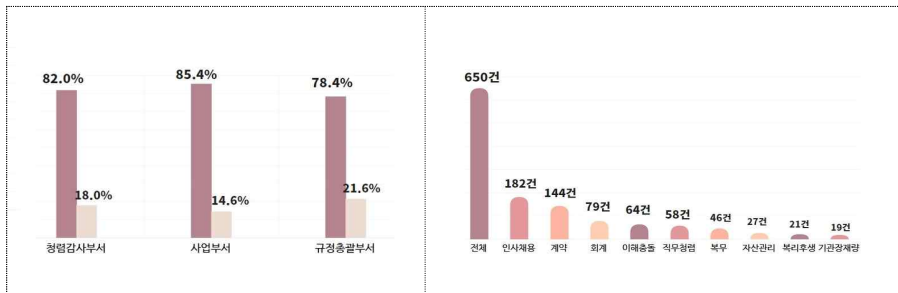


○ 불공정·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청렴경영 추진동력 강화

- 공공기관 내 청렴·감사부서, 총괄부서, 사업부서 등 각 부서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평균 81.9%를 차지
- 도움이 된 개선된 업무도 인사·채용(182개), 계약(144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 유형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업무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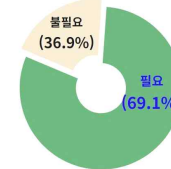
※ 개선권고 업무유형 선택은 중복선택 허용

○ 공공기관 부패진단 효과로 청렴경영 추진동력 강화

- 공공기관 내 모든 규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한 효과가 발생해 청렴경영 추진 계기

③ 부패영향평가 제도 인식 확산 및 관심 제고

- 향후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1%로 나타나 공공기관 스스로 사규 평가 필요성에 공감



필요성	계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필요	278	48	113	38	79
필요	192	34	75	23	60
불필요	82	14	36	14	18
무응답	4	-	2	1	1

- 지난 3년간 사규 개선실적 및 공공기관 부패예방 성과를 언론 홍보, 교육,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대내외 관심 제고

홍보	교육	사례전파
공공기관 사규 개선실적 등 언론 홍보(브리핑, 보도자료 등 27회)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대상 평가 제도 교육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 사례집 발간해 각급 기관 배포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기업 현장 직접 찾아 애로사항 듣고 해결 나선다

2023년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운영계획 시행

(23. 1. 1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운영한다.

현장회의는 각종 인·허가 등 규제, 불합리한 계약,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허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다양한 지역별·업종별·기능별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책부처와 함께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생업으로 인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 현장을 월 1회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둘째, 기업들이 고용, 자금, 판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회의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의견도 청취한다.

마지막으로, 1년간 기업옴부즈만 성과를 분석해 향후 기업고충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협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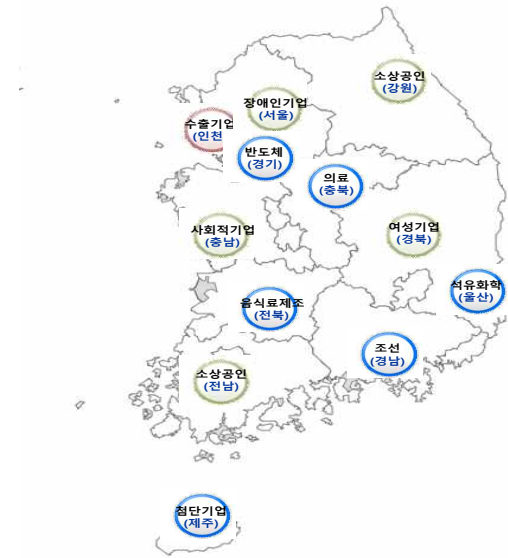
이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기업 고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 현장회의 주요사례

※ 현장회의 주요사례

- ▶ (사례1)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상표, 레시피 등을 도용(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빈발
 - **(제도개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상표등록 안내문'을 제공토록 권고('22.12)
- ▶ (사례2)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정비 필요
 - **(현장조정)** 국민권익위가 용산구청장,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와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간 협의, 조율을 통해 장애인도 원활히 보행할 수 있도록 민자역사 증축시 계획되어있던 공중보행교 위치를 현위치로 조정('21.3)

붙임2 | 현장회의 지역대상안



- * 취약분야별(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지역업종별(경남, 조선업, 전북, 식품업 등), 한인업종별(수출기업 등) 으로 구분
- * 경제 현안 및 우선 해결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업종 변경될 수 있음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22. 12. 30. 국민권익위)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적발했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채용과정 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 제언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구제 곤란 사례 등

< 여전히 잘 다니는 채용비리 관련자 민간 사례 >

‘21년 국정감사 이후 은행에서 유력인사나 임직원의 성적 미달 자녀를 부정 채용하거나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로 조정한 사례가 고구마 즐기처럼 줄줄이 걸려 나왔습니다.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했던 이 부정 채용은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부정 채용자 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계속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결이 난 △△, ▲▲은행 정도만 최근 자진 퇴직하지 않은 부정 채용자들을 퇴직 조치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래 뽑혔어야 할 사람들이 구제된 건 더 더욱 아닙니다. 비리 은행들은 대신 떨어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단 이유를 대고 있고, 그나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들은 부정 채용자를 내보내는 일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5명이 부정 합격했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은행은 은행권 모범규준이 규정한 부정 채용은 아니라면서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임직원들 일부는 되레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년 3월 언론보도)

< 공무원 채용 관련 피해자 구제 곤란 사례 >

□ 구제 배경

-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인천시 과실로 인한 응시생 17명 답안지 분실(‘18.5월)

※ 당시 사건 발생 응시생(17명)의 지원 지역은 부평구(선발예정인원 21명)

□ 구제 방안 : 답안지 분실 응시자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실시

- (필기전형) 기존 필기시험 합격선(74.92점)보다 합격선을 하향 조정(69.92점)하여 합격자 3명 선정(‘18.8월)

- (면접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3명 대상 면접전형 시행, 1명 최종 합격(‘18.9월)

※ (최종선발) 기존 부평구 선발예정인원에서 1명을 추가 임용하여 총 22명 임용

□ 구제 관련 논란 및 시험실시기관 의견

- (관련 법령 위배) 분실 응시자 대상 ‘제한경쟁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채용 원칙 위배

※ 지방공무원법 상 제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해당되지 않음

- (형평성 문제) 합격선 하향·추가 선발로 인한 기존 응시자 차별

- (인천시 입장) 시 고문 변호사 자문·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입장

< 공공기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장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 · 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의 인력으로 허용

< 면접시험 점수 공개 요구 민원 사례 >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전 필기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지만,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면접시험결과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점수가 객관화되어 공개가 가능하지만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도 반영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21.4월 국민신문고)
- 공무원 필기시험은 점수를 알 수 있으나 면접시험은 그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어떤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기 어렵다.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를 수험생에게 상세히 공개한다. 특히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항목에서 각각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공개를 한다(‘16.8월 국민신문고)
-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비공개 행정은 △△△ 지방경찰청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고, 그 행정으로 면접관에게 비공개로 발생되는 면접 평가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2.6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